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2. 부가대상 상품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중 회사가 정한 상품(다만, 특약의 중도부가가 불가한 상품에 한함)

3.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이하 ‘해당계약’ 이라 한다)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 라 한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가’ 항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사유」란 계약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시에 약관 제7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2) 3대 중대질병 진단: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 등

(3)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다. ‘가’ 항 및 ‘나’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신청 이후 취소한 경우 포함)

(2) 갱신형 주계약이 최종 갱신계약인 경우(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인 경우 포함)

(3) 비갱신형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전기납인 경우

- (4) 주계약의 잔여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갱신형 주계약의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포함)
- (5)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다만,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신청가능)

4.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 (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 나. 납입유예 이후의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 한다)만큼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해당계약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라 한다)는 주계약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때, 주계약 납입기간은 납입유예 신청 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
-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주계약 납입기간’ 은 납입유예기간이 속하는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납입기간으로 보며, 계약자는 납입유예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에 해당 시점의 해당계약 보험료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라. ‘나’ 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 갱신형 해당계약의 갱신일 도래 시,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전 보험료,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보험료로 한다.

5. 기타 사항

- 가.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해당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9조(“납입유예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계약자, 납입기간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납입유예기간 이후 납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까지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취소 신청일에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 전 계약상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마. 회사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지급금에 해당하는 해당 시점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차감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납입완료시점 전후로 변경되는 상품의 경우 납입유예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계약의 약관을 적용한다.

사. 기타 사항은 부가대상 상품에 준한다.